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변경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3. 31.

서울특별시

[주요 변경사항]

- 접수방법 : 정부24 창구 및 **HUG 안심전세포털 신청**
 - 정부24 : 정부24(www.gov.kr)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안심전세포털 URL: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 지원한도 인상 : (기존) 최대 30만원 → (변경) **최대 40만원**
- 제출서류 : (기존) 발급 1개월 이내 서류 → (변경) 발급 **3개월 이내** 서류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2025. 3. 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5. 3. 31.~ 상시**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index.jsp)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2.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③(청년 외) **6천만원**,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5. 3. 31. 신청 시, 1985.4.1.(만39세)~2006.3.31.(만19세) 출생자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및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index.jsp) 홈페이지 신청
 - 1) 정부24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자주찾는 검색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IEx/161300000103>)
 - 2) 안심전세포털 : HUG 안심전세포털 접속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하기’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
 -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 (보증가입 동시 신청) HUG 저소득 및 신혼부부 보증료 할인자, 안심전세포털 신청자 등으로 보증보험 신규 가입 시 제출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

□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④ 혼인관계증명서
- ⑤ 소득증빙서류
 - ▶ 공통(소득종류 무관)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 소득별(붙임 1 참고)
 - 가. 근로소득(택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나. 사업소득(택일)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파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 다.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라.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⑥ 본인명의 통장 사본
- ⑦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4. 선정결과 발표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정부24 → ‘MyGov>나의 신청내역’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 안심전세포털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내역’ 확인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5. 이의신청

- 신청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 결과통지 : 30일 이내

6. 기타 사항

- 유의 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 제외, 지원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방문 접수처
1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4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9층 주택관리과
2	중구	주택과	02-3396-5702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6층
3	용산구	주택과	02-2199-735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4	성동구	주택정책과	02-2286-5583/5586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5	광진구	주택과	02-450-7644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우측 4층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
7	중랑구	주택관리과	02-2094-2136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8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07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9층
9	강북구	주택과	02-901-6850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10	도봉구	주택과	02-2091-3514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1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779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본관 3층
12	은평구	주택과	02-351-7360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 4층
13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140-8354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14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31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본관 4층
15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0-3497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823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5층
17	구로구	주택과	02-860-2936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2층
18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7-1333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1층
19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53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건물 5층
20	동작구	주택지원과	02-820-9945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주차장 2층
21	관악구	주택과	02-879-6311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6층
22	서초구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양재주차빌딩 5층
23	강남구	주택과	02-3423-6053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2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02-2147-3072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2층
25	강동구	공동주택과	02-3425-5977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5층

※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1. 연 소득 산정 기준표
 2. 보증료 지원 신청서
 3. 위임장
 4. 서약서
 5. 이의신청서

참고1

연 소득 산정 기준표

소득종류		제출 및 확인서류		연간소득 인정기준
근로소득	1년 이상 재직자	택일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1년 소득확인 시 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2) 1년 소득확인 불가시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급여명세표 등*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최근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	1년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 그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1) 1년 소득확인 시 : 증명원상 소득금액 2) 1년 소득확인 불가시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ISA 가입용) + 급여명세표 등*	1년 미만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상 소득금액 + 그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
	1년 미만 재직자	택일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급여명세표 등*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복직자		급여명세표 등*	복직이후 월 평균급여(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증명원상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영수증상 소득금액
연금소득	1년 이상 수령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최근 1년간 수령액의 합계
	1년 미만 수령자		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배우자 명의로 통장에 입금된 경우 포함)	(연금수령합계액 ÷ 해당월수) × 12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증명원상 소득금액

서식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자격 요건	주택소유여부 ¹⁾	(○, ×)	신혼부부 여부 ²⁾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³⁾	(○, ×)	보증기관 ³⁾	
	보증가입일자 ³⁾	납입보증료 ⁴⁾	원
	임차보증금	원	연소득 ⁵⁾	원

지급계좌 ⁶⁾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	--

작성방법

-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 2)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 4)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
-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6)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서식2**위임장****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이의신청 []	확인서 발급 []
------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성명

(서명)

서식4**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처분내용		[] 부적합 [] 상실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